

'17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매뉴얼

2017. 0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illegible]

※ 첨부서류: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표 1부.

[첨부]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표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취득점수	
합 계					1,000		
A 운영체계	소 계				400		
	A.1	운영관리체계	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실행		30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3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		60		
			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60		
			2.3 지도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70		
			2.4 지도요원의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5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법정장비 외 추가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50		
			3.2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5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대통령:5, 장관:3, 이사장:2)		+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15~-80			
4.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건별 -2점, 최대 -20점)				-2~-2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포함, 동일기관 +5점, 타기관 +10점)		+5~+10		
B 업무성과	소 계				600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1.1 안전관리 위탁 보고서 관리의 적정성		70		
			1.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70		
			1.3 사업장 안전관련 기술자료(매뉴얼, 홍보물 등) 제공		60		
			1.4 위험성평가 인정실적(인정률)		100		
	B.2		재해감소	2.1 업무상 사고재해를 및 사고사망만인을 감소 성과		10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3.1 위탁사업장의 만족도		100		
			3.2 기술지도 우수사례(정성평가)		100		
	가 감 점 항 목	B.4	재해발생 및 감독기관 연계	4.1 감독기관 신고와 연계		+10~+50	
				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별 -10점, 최대 -100점)		-10~-100	
4.3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10점, 최대 -100점)				-10~-100			

A. 운영체제

A.1 운영관리체제

A.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수립·실행	취득 점수	
평가항목(A.1.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필수사항 모두 수립·보유하고 있는 경우	☐	30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필수사항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20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필수사항 중 2가지 누락된 경우	☐	10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필수사항 중 3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	5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이 수립·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평가 대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운영방침 및 위탁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운영표준 수립여부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여부는 안전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의 운영방침 및 업무관련 매뉴얼 등의 문서화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운영방침 등은 기관 운영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서류 또는 전산으로 보유여부를 확인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등은 문서화¹⁾(이하 같음)되어 있어야 함 1)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내용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한 것만 인정 ※ 반드시 문서에 등록된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운영방침은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연간 운영계획을 말함. - 운영방침 필수 항목 : ①기관의 추진전략 및 목표, ②위탁사업장의 재해분석(통계), ③소속직원 운용계획, ④위탁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⑤기술자료 제작·배포계획, ⑥장비 활용계획, ⑦소속직원 및 위탁사업장 교육계획 ※ 운영방침(연간 운영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 운영계획만 인정 ※ 운영방침 필수항목 중 별도 운영표준(지침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평가			

- 운영표준은 위탁사업장의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 업무처리규칙, 지침, 매뉴얼 등을 말함.
 - 운영표준 필수 보유 : ①장비관련 운영지침, ②기술지도 업무수행 관련 지침(매뉴얼), ③기록물(문서) 관리관련 지침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활용여부 평가
 - 운영표준이 정기적인 현행화가 부족하거나 운영방침과 실제 기관의 운영이 상이한 경우(직원 교육·훈련·열람 등이 미문서화) 한 단계 하향 평가(단, 최저 “0점”)
 - ※ “정기적인 현행화 부족”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및 규정이 제·개정되거나 기관의 주요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등에 미반영한 경우를 말함.

A.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취득 점수	
평가항목(A.1.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조직도 및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업무별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따라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 30
	조직도 및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업무별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한 경우		☐ 20
	조직도 및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별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한 경우		☐ 10
	조직도 및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별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 절차가 없는 경우		☐ 5
	조직도 및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없는 경우		☐ 0
평 가 취 지			
○ 평가 대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조직도, 부서·개인별 업무분장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위탁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이행여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을 문서화된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총괄책임자, 위탁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담당 구역 또는 사업장별 분장, 장비 책임자 등 구체적인 책임업무 등이 문서화 ¹⁾ (이하 같음)되어 있는지 확인			
1)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내용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한 것만 인정			
※ 반드시 문서에 등록된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은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 운영계획 및 별도로 업무분장을 문서로 수립한 계획만 인정(다만, 업무분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평가년도 전에 수립한 업무분장도 인정)			
- 업무분장은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필수 항목(①항목제외) 등을 포함한 주요업무와 협력업무(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를 포함하고 담당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업무분장에 주요업무와 협력업무 중 일부 누락된 경우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업무별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여부 확인은 주요업무와 협력업무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 업무분장(주요업무 및 협력업무 등)에 명시된 업무별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 누락여부 확인하여 누락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누락율 10% 미만일 경우 일부누락으로 판단)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2.1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	취득 점수	
평가항목(A.2.1)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 10점 이상인 경우		☐ 60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 7점~9점인 경우		☐ 45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 4점~6점인 경우		☐ 30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 1점~3점인 경우		☐ 15
	전문인력 추가 확보에 실적이 없는 경우		☐ 10
평가취지			
○ 평가 대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최소 법정 전문인력을 제외한 추가 인력 보유 여부 등 전문인력 확보 노력도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법정 필수 인력 외 추가 전문 인력 증원에 대하여 평가 - 법정 최소 지도인력을 제외한 추가 채용 인력에 대하여 자격증, 경력현황(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추가 여유인력 : 위탁한계(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초과하는 지도인력(인력기준에 해당되는 보조자 포함)을 말함. - 추가 여유인력이 위탁사업장의 일반·정밀점검 등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보조자로 활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임금지급대장, 위탁 보고서에 점검·보조자 서명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주의사항 · 추가 여유인력은 평가기간 내 6개월 이상 동안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퇴직 인력을 포함하여 반영(다만, 고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관련 분야 경력은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실무, 그 외 관련 기사·산업기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한함.(다만, 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기본 인력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만 인정) · 민간위탁사업 전담 및 사무관리 업무자는 제외 · 추가 여유인력 중 육아휴직 대체자는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으로 인정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취득 점수	
평가항목 A.2.2.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직원 교육훈련 계획 문서화 및 실시 (내부교육)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내부 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횟수가 전체 지도인력 대비 80% 이상인 경우	☐	30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내부 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횟수가 전체 지도인력 대비 70%~80% 미만인 경우	☐	25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내부 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횟수가 전체 지도인력 대비 60%~70% 미만인 경우	☐	15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내부 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횟수가 전체 지도인력 대비 50%~60% 미만인 경우	☐	10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내부 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횟수가 전체 지도인력 대비 40%~50% 미만인 경우	☐	5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내부 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횟수가 전체 지도인력 대비 40%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평가대상기관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여부와 모든 안전관리 수행인력(법정 및 추가 확보 인원)의 내부(자체) 전문성 향상교육을 실시한 실적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평가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은 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 전문교육 등을 포함하는 직원 내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평가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을 연간 또는 분기별, 월별 등으로 별도로 수립된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인정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으로 작성되어 기관 운영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문서화 ¹⁾ (이하 같음)되어 있어야 함			
1)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내용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한 것만 인정			
○ 내부 전문화 향상교육 실시율 평가			
- 내부 교육 실시 여부 평가는 교육계획에 따른 일정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사진, 교육결과서, 교육일지 등을 통해 확인			
- 전체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직원의 80%이상 참석하지 않은 교육은 실시 횟수로 불인정 (단,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80%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			
※ 평가 대상 기간 내 3개월 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퇴사직원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 인원 산출			

- 교육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만 교육 실시 횟수로 인정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내부 전문성 향상교육은 교육 실시 실적에서 제외
- 지도인력(법정인력 및 추가 인력)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도인력을 10명으로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타 법에 의거 실시하는 내부 법정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제외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취득 점수	
평가항목 A.2.2.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직원 교육훈련 계획 문서화 및 실시 (외부교육)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을 이수실적이 전체 지도 인력 대비 80% 이상인 경우	☐ 30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을 이수실적이 전체 지도 인력 대비 70%~80% 미만인 경우	☐ 25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을 이수실적이 전체 지도 인력 대비 60%~70% 미만인 경우	☐ 15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을 이수실적이 전체 지도 인력 대비 50%~60% 미만인 경우	☐ 10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을 이수실적이 전체 지도 인력 대비 40%~50% 미만인 경우	☐ 5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을 이수실적이 전체 지도 인력 대비 40%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평가대상기관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여부와 모든 안전관리 수행인력(법정 및 추가 확보 인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개설된 교육을 이수한 실적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평가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은 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 등을 포함하는 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평가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을 연간 또는 분기별, 월별 등으로 별도로 수립된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인정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기관내부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으로 작성되어 기관 운영 책임자의 결재를 득했는지 확인(다만, 결재를 득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문서화 ¹⁾ (이하 같음)되어 있어야 함			
1)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내용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한 것만 인정			
○ 외부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			
- 외부 전문교육별 수료증(이수증) 및 외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되는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전문교육별 수강시간을 합산하여 평가			
-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 등 법적으로 등록된 외부 교육기관에서 개설된 안전관리 관련 전문화교육(인터넷 교육 포함)을 이수시 실적 인정(단, 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경우 제외)			
※ 직무수행에 보조적인 교육(CS교육, 강사전문 과정, 통계, 기업진단 등)도 이수 교육실적에 포함			

-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 등 등록된 교육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교육은 실적에서 제외
 - 안전관리 업무 수행 등과 관련된 법적 교육 또는 필수 교육은 실적에서 제외
 -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별 16시간 또는 3일 이상 외부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개인별 이수 실적으로 인정
- ※ 평가대상 기간내 6개월 이상 동안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퇴사직원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 인원으로 산출

A.2.3	지도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취득 점수	
평가항목 A.2.3.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지도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위탁사업장 규모기준)	100인 이상 위탁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3호, 4호에 해당되는 인력이 25% 미만 담당		☐ 30
	100인 이상 위탁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3호, 4호에 해당되는 인력이 25~35% 미만 담당		☐ 20
	100인 이상 위탁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3호, 4호에 해당되는 인력이 35~45% 미만 담당		☐ 10
	100인 이상 위탁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3호, 4호에 해당되는 인력이 45% 이상 담당		☐ 5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 중 규모가 큰 사업장(100인 이상)의 안전관리에 대해 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난 소속 직원의 수행여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사업장 규모별 지도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평가 - 지도인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제3호, 4호)에 해당 인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담당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담당 백분율로 평가) - 지도인력은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인력만 평가(민간위탁사업 전담 및 사무관리 업무자는 제외) ※ 평가기간 내 6개월 이상 동안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퇴직 또는 신규 채용한 인력을 포함하여 반영 - 위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은 평가일 기준으로 전월에 공표된 공식 통계의 근로자수로 판단			

A.2.3	지도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취득 점수	
평가항목 A.2.3.2	평가기준 (배점 : 40)		평가결과
지도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지도인력별 위탁사업장 수 기준)	지도인력의 평균 위탁사업장수 미만으로 위탁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비율이 55% 미만인 경우		☐ 40
	지도인력의 평균 위탁사업장수 미만으로 위탁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비율이 55% 초과~60% 이하인 경우		☐ 30
	지도인력의 평균 위탁사업장수 미만으로 위탁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비율이 60% 초과~65% 이하인 경우		☐ 20
	지도인력의 평균 위탁사업장수 미만으로 위탁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비율이 65% 초과~70% 이하인 경우		☐ 10
	지도인력의 평균 위탁사업장수 미만으로 위탁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비율이 70% 초과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지도인력별 사업장 배분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사업장 수의 편차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지도인력별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 평가 - 지도인력의 평균 위탁사업장 미만으로 위탁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비율을 확인하여 평가 - 지도인력은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인력만 평가(민간위탁사업 전담 및 사무관리 업무자는 제외) ※ 평가일 기준으로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도인력으로 평균 담당 위탁 사업장 수 등을 산출			

A.2.4	지도요원의 법적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취득점수	
평가항목 A.2.4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지도인력의 법적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장비사용 및 교정 방법 모두 숙지		☐ 50
	장비사용 및 교정 방법 일부(75%이상) 숙지		☐ 30
	장비사용 및 교정 방법 일부(75%미만) 숙지		☐ 10
	장비사용 및 교정 방법 모두 미숙지		☐ 0
평 가 취 지			
○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인력의 이해도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지도인력의 법적장비(추가 장비 포함. 이하 같음) 사용방법 숙지 정도 평가 - 법정장비에 대하여 지도인력으로 하여금 사용 및 교정방법을 확인하여 숙지여부를 확인 - 평가자는 지도인력 중 임의로 2명을 선정하고 법정장비(15종) 중 평가 장비는 4종을 선정 - 선정된 지도인력(2명)에게 선정된 장비(4종)의 사용법 및 교정방법에 대한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알고 있는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 ※ 선정된 지도인력이 장비의 사용법 및 교정방법을 각각 평가 -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장비의 사용매뉴얼을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요구한 사용매뉴얼 미제공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교정방법 미숙지로 평가			
안전관리전문기관 장비 기준(시행규칙 별표5)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 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A.3 시설 · 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3.1	법정장비 외 추가확보 및 유지 · 관리의 적정성	취득 점수	
평가항목 A.3.1.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법정장비 외 추가확보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를 5종 이상 확보한 경우	☐ 20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를 3~4종 확보한 경우	☐ 15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를 1~2종 확보한 경우	☐ 10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가 없는 경우	☐ 5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인 안전관리 지도 시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주요 착안사항	○ 법정 장비 외 별도 추가 확보한 장비 보유여부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예_산업용 내시경, 와이로프테스터기, 누전차단 시험기, 열선풍속계 등) 보유를 확인하여 평가 ※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불필요한 추가 장비는 제외되며, 해당 장비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구매실적이 있어도 평가시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미보유로 판단 ※ 법정 장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다기능 장비는 법정장비로 판단 ※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추가 장비는 “1종”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 단순 측정용 장비(저울, 체온계, 혈압계 등)는 불인정		

A.3.1	법정장비 외 추가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취득점수	
평가항목 A.3.1.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유지·관리 적정성	장비운용(관리) 지침이 있고 자체 지침에 따라 검·교정을 모두 실시한 경우	☐ 30	
	장비운용(관리) 지침이 있고 자체 지침에 따라 검·교정을 1~2대 누락한 경우	☐ 20	
	장비운용(관리) 지침이 있고 자체 지침에 따라 검·교정을 3~4대 누락한 경우	☐ 10	
	장비운용(관리) 지침이 없는 경우 또는 자체 지침에 검·교정을 5대 이상 누락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 가 취 지	○ 보유장비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을 위해 평가대상기간 내 장비 유지·관리상태 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주요 착안사항	○ 보유 장비의 유지·관리 기록 및 검·교정의 적정성 평가 - 장비의 관리방법, 보유장비 현황, 검·교정 주기 등을 포함한 자체 장비운용(관리) 지침 등이 있는지 확인 - 장비운용(관리) 지침에 정한 검·교정 대상 장비의 검·교정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장비운용(관리) 지침 주기에 따라 검·교정 누락여부 확인 ※ 장비운용(관리) 지침에 검·교정 대상 및 주기가 없는 경우 지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자체 지침에 따라 검·교정 대상 장비의 검·교정을 누락한 장비의 수(대)로 평가		

A.3.2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취득 점수	
평가항목 A.3.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법정장비 및 추가 장비의 활용실적에 대한 점수는 아래의 산정표에서 따라 점수부여		점 *상정표에서 최종점수 산정
평 가 취 지			
○ 보유 장비의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 지도 시 활용여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평가 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의 활용실적 평가 -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 지도 시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수(개소)와 장비의 수(종) 확인 ※ 동일한 2대 이상 보유 장비를 활용할 경우 활용 실적은 “1종”으로 판단(장비명 기준 적용) - 장비 사용대장과 사업장별 상태보고서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값 등이 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활용 실적으로 인정 - 상태보고서 내용에 측정장소, 대상설비, 판정기준, 개선대책 등이 명확하게 제시여부 확인 - 평가 대상기관과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해당시) 각각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가감점 항목)

A.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배점:최대 +10점)	취득 점수	
평가항목 A.4.1	평가기준 (배점 : 최대 +10점)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이 있을 시 10점까지 가점부여		_____점
평 가 취 지	○ 평가대상 기관 또는 소속 지도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평가		
주요 착안사항	○ 평가대상 기관 또는 소속 지도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평가는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부장관, 이사장”으로부터 기관 또는 소속 지도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을 확인 ※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제외) 및 지자체(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포상 포함 ※ B.3.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수상한 포상은 제외 - 평가대상 기관명(평가기관의 대표자 포함) 기준으로 포상실적 판단 ※ 포상에 기재된 기관명이 평가대상 기관명과 다를 경우 불인정 (불인정 예_ 평가기관명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포상기관명 : 안전보건공단) - 포상실적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단, 최대 10점) - 전년도 평가 시 반영된 포상실적은 제외		

A.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배점: 최대 -8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4.2	평가기준 (배점 : 최대 - 80점)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_____개월 × - 15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평가 대상 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평가는 - 최근 2년 이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평가 - 전년도 평가 시 반영된 업무정지 처분건수는 제외		

A.4.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배점:최대 -20점)	취득 점수	
평가항목 A.4.3	평가기준 (배점 : 최대 - 20점)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경고 처분 _____건 × - 2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평가 대상기관의 시정조치·경고 처분에 대한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시정조치·경고 처분에 대한 평가는 - 최근 2년 이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평가 - 전년도 평가 시 반영된 시정조치·경고 처분건수는 제외			

A.5 종합화(가감점 항목)

A.5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업 구성 포함)	취득 점수	
평가항목 A.5.1	평가기준 (배점 : 최대 10점)		평가결과
종합기술지원(컨 소시업 구성포함)	동일기관간 컨소시업 구성 : +5		_____ 점
	타기관간 컨소시업 구성 : +10		
평 가 취 지			
○ 안전관리전문기관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기관의 제한된 역할 극복을 위해 컨소시업 구성 등을 통한 상호보완 노력도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종합기술지원 평가는 - 컨소시업 구성시 구두교류가 아닌 계약서 및 관련서류(협약서 등) 작성 후 시행 하며, 시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 ※ 컨소시업(협약) 후 결과물이 없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컨소시업 기관 간 종합기술지원 실적은 공문 또는 서류상 확인가능한 건만 인정 - 동일기관의 의미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타기관을 말함 - 타기관의 의미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외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 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등록·지정된 기관(분야)을 말함. ※ 안전관리업무 관련 있는 기관(전기사업법에 의한 등록·지정된 기관 등)은 인정 ※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제외			

B. 업무성과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B.1.1	안전관리 위탁 보고서 관리의 적정성	취득점수	
평가항목 B.1.1.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안전관리 위탁 사업장 관리카드 적정성	사업장 관리카드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 30
	사업장 관리카드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5% 미만 인 경우		☐ 20
	사업장 관리카드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5~10% 미만 인 경우		☐ 10
	사업장 관리카드가 없는 사업장이 있거나 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10%이상 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의 사업장 관리카드를 확인하여 현황관리 여부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탁사업장의 관리카드의 적정성 평가 - 위탁사업장의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관리규정”의 별지 1호서식 사업장 관리카드 내용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전체 위탁사업장 수의 100개소 당 10개소(필요시 추가 가능) 임의 선정하여 확인 (예_ 위탁사업장 210개소→ 30개소, 330개소→40개소 선정) ※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를 확인하여 사업장 관리카드 내용 누락여부 확인 ※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위탁사업장의 산재관리번호 작성 오류로 산업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관리카드 내용 누락사업장으로 판단			

B.1.1	안전관리 위탁 보고서 관리의 적정성	취득점수	
평가항목 B.1.1.2	평가기준 (배점 : 40)		평가결과
안전관리 위탁 사업장 상태보고서 적정성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 제출일자가 적정하고 사업장 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 40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 제출일자가 적정하고 사업장 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된 보고서가 5%이상 인 경우	☐ 30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 제출일자가 적정하고 사업장 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된 보고서가 5~10%이상 인 경우	☐ 20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 제출일자가 적정하고 사업장 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된 보고서가 10~15%이상 인 경우	☐ 10	
	사업장 상태보고서 없는 사업장 또는 제출일자가 부적정하거나 사업장 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된 보고서가 15%이상 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의 적정성 평가 -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 개별 파일을 확인하여 상태보고서 적정하게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 ※ 평가당일 사업장 방문계획에 따라 방문하는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는 제외 (단, 평가 완료시까지 점검 후 복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필수) - 상태보고서에 제출일자 준수, 사업장 담당자 확인일자 및 서명, 관리자의 결재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장에 상태보고서의 제출여부 확인(확인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경우 “0”점 처리) ※ 전체 위탁사업장 수의 100개소 당 10개소(필요시 추가 가능) 임의 선정하여 확인 (예_ 위탁사업장 210개소→ 30개소, 330개소→40개소 선정)			

B.1.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취득 점수	
평가항목 B.1.2	평가기준 (배점 : 70)		평가결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기술적 또는 현실적으로 모두 타당한 경우		☐ 70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기술적 또는 현실적으로 5% 미만 타당하지 않은 경우		☐ 50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기술적 또는 현실적으로 5~10% 미만 타당하지 않은 경우		☐ 30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기술적 또는 현실적으로 10~15% 미만 타당하지 않은 경우		☐ 20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기술적 또는 현실적으로 15~20% 미만 타당하지 않은 경우		☐ 10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기술적 또는 현실적으로 20%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를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타당성(적정성)을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상태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평가			
- 전체 위탁사업장 수의 100개소 당 10개소(필요시 추가 가능) 임의 선정하여 확인 (예_ 위탁사업장 210개소→ 30개소, 330개소→40개소 선정)			
- 위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에 대한 개선대책이 기술적 또는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확인하여 평가			
※ 유해·위험요인 또는 개선대책이 누락된 경우는 부적정으로 평가			
※ 유해·위험요인 및 기술적 대책제시가 일반적인 내용일 경우 부적정으로 평가 예) (위험요인) 리프트 안전장치 미설치 →(대책) 리프트 안전장치 설치			
- 위탁사업장의 발생한 재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동종재해예방대책 수립여부 확인 및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적정한지 확인하여 평가			
※ 재해발생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이 제시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으로 평가			

B.1.3	사업장 안전관련 기술자료(매뉴얼, 홍보물 등) 제공	취득 점수	
평가항목 B.1.3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사업장 안전관련 기술자료 제공	사업장 안전관련 기술자료(매뉴얼, 홍보물 등) 제공 실적에 대한 점수는 아래의 상정표에서 따라 점수부여	_____점 *상정표에서 최종점수 산정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의 안전관리 지도 시 안전관련 기술자료 제공여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탁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기술자료 제작 및 제공 실적 평가 -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작한 기술자료 건수(종) 및 사업장별 배포 실적 현황을 제출받아 사업장별 상태보고서 등을 비교하여 평가 ※ 전체 위탁사업장 수의 100개소 당 10개소(필요시 추가 가능) 임의 선정하여 확인 (예_ 위탁사업장 210개소→ 30개소, 330개소→40개소 선정) - 위탁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제작한 기술자료 건수(종)를 확인하여 평가 ※ 기술자료는 책자, 포스터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안전보건관련 내용이어야 하며, OPL 등 제작한 단순 기술자료는 최대 3종만 실적으로 인정.(자체 제작한 기술자료 중 개인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E-mail 등으로 배포하는 기술자료는 실적에서 제외) - 위탁사업장에 자체 제작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배포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위탁사업장별 안전보건관련 기술자료 6종 이상 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평가대상 기관이 직접 제작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평가대상 기관명 기준으로 평가) 단, 평가대상 기관의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 명으로 제작된 것은 인정		

B.1.4	위험성평가 인정실적(인정율)	취득점수	
평가항목 B.1.4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위험성평가 인정실적(인정율)	전체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율이 20% 이상인 경우		☐ 100
	전체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율이 16~20% 미만인 경우		☐ 70
	전체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율이 12~16% 미만인 경우		☐ 50
	전체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율이 8~12% 미만인 경우		☐ 30
	전체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율이 4~8% 미만인 경우		☐ 20
	전체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율이 4% 미만인 경우		☐ 10
	위험성평가 대상 위탁사업장 중에서 인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0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2에 의거 평가기관의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은 120억, 토목 150억 미만)]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율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대상 위탁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인정실적 평가 - 전체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대상 사업장 수 확인 ※ 전체 위탁사업장 현황을 제출 받아 평가일 기준으로 전월에 공표된 공식 통계의 근로자수를 확인하여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대상 사업장 수 확인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위탁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수 확인 ※ 평가일 기준까지 위험성평가 인정받아 유지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을 말함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위탁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100점” 부여			

B.2 재해감소

B.2.1	업무상 사고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취득점수	
평가항목 B.2.1.1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업무상 사고재해율 감소성과	전년 동기대비 사고재해율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 50	
	전년 동기대비 사고재해율이 3~5%미만 감소한 경우	☐ 30	
	전년 동기대비 사고재해율이 3%미만 감소한 경우	☐ 20	
	전년 동기대비 사고재해율이 5%미만 증가한 경우	☐ 10	
	전년 동기대비 사고재해율이 5%이상 증가한 경우	☐ 0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에 대한 업무상 사고재해율 감소성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탁사업장에 대한 업무상 사고재해율 감소성과 평가 - 평가 대상기관의 위탁사업장 현황을 제출 받아 평가 ※ 평가년도에 위탁 해지된 사업장 중 위탁기간이 3개월이상 업무수행한 사업장 포함 - 위탁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산재관리번호) 및 개시번호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사고재해율 산출 - 위탁사업장에서 사고재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50점” 부여 ※ 사고재해율 : $\frac{\text{사고재해자수(사고부상자 + 업무상사고사망자 + 그 외 사고사망자)}}{\text{근로자수}} \times 100$			

B.2.1	업무상 사고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취득점수	
평가항목 B.2.1.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성과	전년 동기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 50	
	전년 동기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8~10% 미만 감소한 경우	☐ 30	
	전년 동기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5~8% 미만 감소한 경우	☐ 20	
	전년 동기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5% 미만 감소한 경우	☐ 10	
	전년 동기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한 경우	☐ 0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에 대한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탁사업장에 대한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 평가 대상기관의 위탁사업장 현황을 제출 받아 평가 ※ 평가년도에 계약 해지된 사업장 중 위탁기간이 3개월이상 업무수행한 사업장 포함 - 위탁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산재관리번호) 및 개시번호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출 - 위탁사업장에서 업무상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50점” 부여 - 사고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사망자/근로자*10,00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B.3.1	위탁사업장의 만족도	취득점수	
평가항목 B.3.1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위탁사업장의 만족도	위탁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 100
	위탁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90~95점 미만인 경우		☐ 70
	위탁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85~90점 미만인 경우		☐ 50
	위탁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80~85점 미만인 경우		☐ 30
	위탁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75~80점 미만인 경우		☐ 10
	위탁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서비스 제고를 위한 위탁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위탁사업장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 - 평가 대상기관의 위탁사업장 현황을 제출 받아 만족도 평가 ※ 평가일 기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위탁사업장에 한함. - 위탁사업장에 대하여 설문지, 유선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 설문은 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점수에 따라 평균 점수 산정 (예) ① 현장 방문시 사전업무준비 ②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기술지도)서비스 제공 ③ 지도인력의 적극성 ④ 안전보건정보의 원활한 제공 ⑤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 기여도			

B.3.2	기술지도 우수사례(정성평가)	취득 점수	
평가항목 B.3.2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기술지도 우수사례 (정성평가)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5종류 이상인 경우	□100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4종류 인 경우	□ 80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3종류 인 경우	□ 60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2종류 인 경우	□ 40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1종류 인 경우	□ 20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정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추진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 -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정성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아래(①~⑨)의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실행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 ① 위탁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보급한 실적(1회 이상) ② 평가 대상 기관에서 자체 수립하여 시행한 안전관련 캠페인 실적(4회 이상) ③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캠페인 참여(4회 이상) ④ 위탁사업장 중 고위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체교육 실시(2회 이상) ※ 교육 계획 및 결과에 예산, 대상, 일정,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의 증빙서류 있는 경우만 인정 ⑤ 평가기관(기관장) 명의의 안전관련 신문기고 등 언론매체 홍보 실적(2회 이상) ⑥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안전관련 현수막 게시 실적(4회 이상) ⑦ 위탁 사업장내 안전관련 현수막 게시 실적(위탁사업장의 5%이상) ⑧ 지자체 및 지역 안전보건관련 협의회에 안전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위촉장이 있는 경우) ⑨ 기타(상기 내용과 동등 이상의 기준으로 기타 재해예방 활동 실적)			

B.4 재해발생 및 감독기관 연계

B.4.1	감독기관 신고와 연계	취득 점수	
평가항목 B.4.1	평가기준 (배점 : 최대 50점)		평가결과
감독기관 신고와 연계	급박한 위험요인 등 신고 _____ 건 × 1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 사업장 급박한 위험요인 등을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주요 착안사항	○ 감독기관(고용노동부)에 급박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신고 실적 평가는 - 위탁사업장에 안전관리 기술지도 시 급박한 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 - 신고대상 : 급박한 위험요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 급박한 위험요인 : 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산소결핍, 질식, 중독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②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구조물 노후 등으로 인해 붕괴, 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B.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취득점수	
평가항목 B.4.2	평가기준 (배점 : 최대 -100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건수 : _____건 × -1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평가는 - 전년도 평가일로부터 평가년도 평가일 전날까지 위탁사업장에서 발생(산재보험 승인 기준 적용)한 중대재해(업무상사고 관련 중대재해만 해당, 이하 같음) 건수를 확인 ※ 중대재해 발생 건수 중 위탁계약 전 또는 계약 해지 후 발생한 건수는 제외 ※ 평가 대상기관은 최초 평가일 경우에는 평가년도에 발생한 건수만 평가 ※ 전년도 평가 시 반영되지 않은 중대재해 건수는 포함하여 평가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함.			

B.4.3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취득점수	
평가항목 B.4.3	평가기준 (배점 : 최대 -100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산업재해 은폐 건수 : _____건 × -1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위탁사업장의 산재은폐 현황에 대하여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산재은폐에 대한 평가는 - 전년도 평가일로부터 평가년도 평가일 전날까지 위탁사업장의 산재은폐가 확인된 건수(고용노동부에서 산재은폐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를 확인 ※ 산재은폐 중 위탁계약 전 또는 계약 해지 후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는 제외 ※ 평가 대상기관은 최초 평가일 경우에는 평가년도에 확인된 건수만 평가 ※ 전년도 평가 시 반영되지 않은 산업재해 은폐 건수는 포함하여 평가			